

## 실명보도와 인권

류승삼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 기사들을 어느 신문에서나 거의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① 「대전중부경찰서는 10일 프로야구를 보다 집단난투극을 벌인 관중 50여명 가운데 김윤남씨(25·식당종업원·대전 동구 소재동 285의 5)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9일 하오 4시 30분께 대전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빙그레와 해태의 경기를 보던 중 심판판정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다른 관중 50여명과 함께 30여분간 유리병과 의자 등을 집어 던지며 집단난투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② 「제주경찰서는 12일 시외버스 요금문제로 운전사와 말다툼하는 것을 꾸짖은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순흥

씨(39·노동·제주도 서귀포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문태진 씨(71·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가 나무라는데 불만, 버스 밖으로 끌어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③

「11일 오후 2시쯤 대전시 비례 등 148 하버드대학원에 다니는 이미경 양(21·대전시 대화동)이 길이 2m 정도의 줄넘기 줄로 천장 수도관에 스스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④

「8일 하오 5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국도에서 경기 2러 7176호 프레스토 승용차(운전자 홍창의·33·부천시 중구 원미동 명신아파트 가동 503)가 서울 9바 2027호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홍씨의 아버지 성순 씨(61), 누나 성재 씨(34), 딸 진영 양(3)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앞에 인용한 4건의 기사는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실명보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사에는 이름뿐 아니라 주소·연령·성별·직업까지도 밝혀져 있다. 이런 종류의 보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언론계의 오랜 관행이며 그 관행은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실명보도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피의자나 사건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은 과연 없는 것인가. 앞의 4가지 사건에 있어서 책임보도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한 것인가. 실명으로 보도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 가령 앞의 4가지 사건을 모두 가명이나 익명으로 보도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을 떠올리고 보면 우리 언론이 오랜 관행에 따라 아무런 의식없이 답습하고 있는 실명보도주의는 적어도 철저한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알 권리만을 위해 실명보도를 고집해야 하는가

①의 기사부터 차례로 실명보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①의 기사는 경기장 관중의 난동사건에 대한경찰의 수사결과를 객관적 형식을 빌어 작성한 것이다. 기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김씨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제삼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면에선 이 기사가 피의자 김씨의 명향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의 혐의가 나중에 가서는 벗겨질 수도 있지만 기사에선 분명히 「경찰에 의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붙인 이상 그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언론으로서 책임을 회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①의 기사를 읽은 독자 가운데 피의자인 김윤남 씨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단순한 용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는 어디까지나 용의자일 뿐이다. 그러나 일단 보도상의 피의자는 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기사가 「~혐의로 구속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피의자가 무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경찰의 판단만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덧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가. 경찰이 정찰에 영장을 신청한 사건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그를 타당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전체의 50%를 넘지 못한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이 두고 있는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기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사실이 극히 경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된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애초에 보도할 가치가 없었던 셈인데 언론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만 것이다. ②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이다. 30 대의 젊은이가 말다툼을 말리는 70 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치사나 상해치사사건을 넘어 「경노」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관습에도 회하는 특이한 행위이다. 때문에 충분히 기사거리는 된다. 그러나 ②의 경우 역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현 단계로서는 그의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물론 ①②의 경우, 많은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고 목격자의 진술이 경찰조서에 기재되어 있었을 터이기에 두 사건의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의 주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유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①②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신중과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도 ①②사건은 피의자가 유죄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경우이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기사는 기자가 목격자의 진술을 들을 기회가 없이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에 의존해 작성한 것들이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최근에도 수사기관들이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혐의사실을 조작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법정에서거나 사소한 범법사실이 크게 과장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 형편이다.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구속피의자 1 백명 중 25 명이 검찰조사과정에서 풀려나고 있고 1 심 판결에서는 44 명이 2 심에서는 8.5 명이 풀려나 전체 구속피의자 중 실형을 받는 사람은 22.5 명 뿐이다. 이는 결국 형사사건이 모두 기사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중 77.5%는 무죄를 유죄인 것처럼 보도했거나 벌금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소한 범법행위였던 것을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과장된 보도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경우는 적어도 유죄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경찰의 조서내용을 그대로 옮긴 보도가 1백% 인권침해이지는 않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통계를 보면 구속사건 가운데는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기각처분을 받는 사건이 해마다 전체 사건의 5%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는 1백% 인권침해이다. 우리 언론이 이들 사건을 보도할 때 그러한 판결이나 처분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고려를 하고는 있는 것일까. 또 일단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던 기사가 뒤에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초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의 기사는 신지 못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을 속보로 보도해서 명예를 회복해주려는 성의라도 보이고 있는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아닌 경우는 더 상 추적조차 않은 채 첫 보도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명보도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인지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사예로 본 실명보도주의의 문제점

한 여성의 자살이 내용인 ③의 기사와 한 가족의 교통사고가 내용인 ④의 기사는 실명보도의 필요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③의 기사의 내용인 자살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자살로 해서 사회가 해를 입은 것도 없다 그런데 기사에는 자살한 여인이 다니던 학원의 이름과 주소가 밝혀져 있다. 이 여인의 자살이 학원과 연관된 것이라면 학원의 주소와 이름이 보도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자살은 학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단지 자살을 한 장소를 밝히기 위해 인용되었을 뿐이다. 학원은 자살기사가 보도됨으로 해서 영업상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언론은 학원의 주소와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 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또 기사에는 자살한 여인의 실명이 들어 있다. 이미경이란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과 이아무개라는 익명이나 이영자라는 가명으로 보도하는 것과의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기사의 경우에는 다행히 주소를 동까지만 밝히고 있으나 번지까지 밝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가족들은 그 사실을 주위에 숨기고 싶지 널리 알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한 여인의 자살이 기사거리가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사회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해서 자살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회의 인식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느 곳에 사는 누구의 가족이 자살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에도 없는 실명의 이름과 주소를 단지 6 하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시함으로써 자살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언론의 횡포일 것이다. ④의 교통사고 기사의 경우는 ③의 경우보다 더 실명보도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이 사고가 기사화된 것은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다는 특이성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이 기사가 지닌 사회적 효용성은 교통사고에 대한 얼마간의 경각심뿐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사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드러남으로 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느낄 것이다. 교통사고가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나 자랑거리인

것도 아니다. 불행은 이미 당한 것이고 가족끼리나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뒷수습이나 했으면 하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이 갖는 심정일 것이다. 그것이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짐으로써 주위의 주목을 받게 됐다면 항변할 거리는 못되나 결과적으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 것인가 실명보도주의가 가져오는 인권의 침해사례는 상상 외로 많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일단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실명보도가 되고 나면, 뒤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나 사생활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실명보도주의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범법을 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서 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나는 것이 법리이다. 즉 일반 시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명이 보도된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한 뒤라도 정상인으로서의 사회적 복귀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언론의 실명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는 법적 책임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형벌 아닌 형벌도 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 속에 들어있다고 할 것인가. 범법을 했던 사람의 사회복귀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 가족이 받게 되는 피해는 더욱 더 억울한 것이다. 큰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름과 함께 주소가 밝혀 지고 때로는 가족의 사진과 이름 까지도 등장하게 된다. 봉건사회도 아닌 이상 설사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연대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경우 범법자의 가족 역시도 실질적인 실명보도로 인해 거의 예외없이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 실명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

그럼 에도 실명 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명보도의 사회적 이익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자의 행위,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언론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진실」 보도의 의무가 언론에게 기본적으로 짐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경우는 보도해야 할 대상의 실체가 그만큼 부정확하게 전달돼 진상규명에 허점을 지니게 되고 사건의 배경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건 당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도 물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나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그 중요한 권리이며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알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가명이나 익명이 보도의 원칙이 되어버리면 수사당국이 마음놓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며 언론이 발표사실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져 오히려 인권침해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이 구속상태에 있는가를 사회가 알게 되는 것은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내포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져 수사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거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권력의 감시기능과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의 예방기능이 실명보도가 아닐 경우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명보도가 일종의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함으로써 권력의 범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범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범죄사건의 경우 실명으로 보도해야 주위로부터 관련된 제보도 받을 수가 있어 유죄 쪽이든 무죄 쪽이든 진상규명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 보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명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언론의 성의 있는 추후보도를 통해 명예나 권리를 회복시켜줄 길도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구속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속보를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의 말을 보도해주고 수사당국의 잘못을 언론이 지적하는 것을 통해 명예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명보도의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얼마든지 제기 될 수 있다. 익명이나 가명보도가 진상의 추구에 허점을 지닌다고 하지만 공적 인물의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의 진상추구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강도사건의 보도의 경우 그 혐의자가 누구라는 것이 진상규명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가. 현재 미성년자가 병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가명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이지, 읽고 난 직후에 잊고 말 이름이나 주소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알 권리는 주로 국가권력이나 공적 인물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한 평범한 시민의 사사로운 행위에까지 마음대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익명보도가 관행이 될 경우 수사당국의 정보조작 가능성이 커지고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이 언론에 대해서는 실명을 알리도록 하고 보도만은 익명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실명보도보다는 더 이상적인 보도태도라고 할 것이다. 실명보도가 범죄의 예방기능과 사회적 제재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책임이 일반인과는 다른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범한 개인에게까지 언론이 실명보도를 통해 형벌 이외의 사회적 제재까지 가할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가. 실명보도를 해야 제보도 가능해져 진상규명이 용이해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불명예를 확산시키고 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울러 실명보도를 통한 결과적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는 속보나 해명 기사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언론이 사후적인 성실과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권리의 완전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피의 사실이 보도됐을 때 첫 기사를 읽었던 사람이 속보도 빠짐없이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또 첫 보도와 똑같은 비중으로 속보나 해명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그 속보는 뉴스로서의 가치가 첫 보도 때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든 간에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실명보도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한일조차 없다. 물론 우리보다 언론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실명보도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언론계와 법조계 등에서 대대적인 논란을 벌여 언론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그 결과 언론기관들은 성인에 관한 보도는 으레 실명으로 한다는 관행에 많은 예외를 두게 되었고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사스타일과 지침을 마련해내기에 이르렀다. 이를 테면 일본 NHK는 지난 1984년부터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용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공동통신의 기사작성을 위한 기준집은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는 익명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작성에 있어서 실명으로 할 것인가, 익명으로 할 것인가, 경칭을 붙일 것인가, 안 붙일 것인가를 인권문제와 관련해 항상 깊이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용의자 경칭문제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판단해야

실명보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의자에게 경칭을 붙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우리 언론계가 음미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입장에서만 보면, 흉악범일지라도 경칭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감정과는 분명히 어긋난다. 그렇다고 경칭을 생략한다면 언론이 사법부에 앞서 유죄판결을 내린 결과가 되고 만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실명보도를 할 경우 사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게 되고 그렇다고 개인의 사생활부분을 제외하면 완벽한 기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뒤의 경우에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대상자가 공인이거나 범죄사건등과 같이 뉴스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계될 때는 사생활침해가 우려될지라도 실명을 쓴다는 게 요미우리신문의 기준이다. 한편 공동통신의 기준집은 경칭이냐 아니냐는, 첫째 가능한 한 많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둘째 최근의 예를 참고하며, 셋째 사회통념이나 시민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미묘한 경우에는 「00 사장」 「00 계원」 등과 같은 직책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경칭을 생략해도 좋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스포츠 및 연예오락기사에서의 선수나 연예인 ㉡ 영장이 발부된 범죄용의자가 체포되었거나 지명수배되었을 때(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선 경칭을 붙인다. 다만 그 전이라도 용의점이 명백해 시민 감정상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00 사장」 등의 방법을 쓴다) ㉢ 인사발령, 입후보자의 일람표 ㉣ 역사상의 인물 ㉤ 좌담회의 발언자(경칭 생략을 기사 앞에 밝히는 것을 전제) ㉥ 분명 한 교통사고 가해자 ㉦ 비난 받을 행위를 한 어린이 ㉧ 자녀동반 자살을 한 부모 등등. 공동통신의 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시민감정을 우선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은 우리와는 문화와 관습이 달라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경칭을 생략하는 것이라든지 자녀와 동반자살한 부모에 경칭을 붙이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뒤의 경우에는 일본언론사들 간에도 견해가 달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은 경칭을 사용하고 공동통신과 아사히신문은 경칭을 생략하고 있다. 어쨌든 경칭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 기사를 통일시키고 있는 것은 본받을 점이다. 그것은 기자 개인의 자의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한가지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언론사 나름대로 구체적 원칙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을 정해 둔다는 자체가 언론이 인권문제에 대해 그만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언론의 경우 대부분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도 경칭을 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머리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보듯이 정작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할 실명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인 경찰의 영장신청 단계에서부터 서슴없이 쓸 뿐

아니라 범인임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보다는 사회통념이나 시민감정을 중시하려면 영장이 발부된 뒤나 용의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경칭을 생략해야 기사에서 실명을 쓰고 범인임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과 맥락이 같아질 것이다. 반면에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적어도 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보도에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야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이라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신문들은 유·무죄를 알 수 없는 단계에서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보도에선 우리 언론처럼 「경찰에 따르면 000 씨는 ~ 했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000 씨는 00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외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우리 언론의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저 관행을 좇아 채택하고 있는 실명보도주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랜 관행이자 그 나름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 실명보도주의를 하루 아침에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실명보도주의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그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실명보도와 실정법

실명보도가 갖는 문제점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명예훼손, 사생활의 권리침해, 피의사실의 공표와 같은 실정법상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는 성명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를 뜻하는 성명권리 민법에 독립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서독의 민법 12 조, 스위스의 민법 29 조, 이탈리아의 민법 7 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행위의 일반법리가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 750 조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제 751 조를 원용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열려있다. 이러한 법현실은 우리 사회의 성명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명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언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에도 위자료의 액수가 미미해 소송의 실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 법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성명권도 독립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소송제기도 잦아지고 위자료의 액수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신중한 고려없이 실명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언론은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명보도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정해 스스로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책임한 실명보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도 된다. 현행 헌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21 조 4 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이 이러한에도 윤리적 고려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실명보도를 함으로 해서 해마다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말썽이 되는 기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6년 10월 한 금융기관 간부의 부인이 집에서 피살되었을 때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피살자의 남편과 딸의 이름을 주소와 함께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범인 피살자와 치정관계가 있는 듯하다는 수사관의 견해를 곁들였다. 그러한 수사관의 견해가 잘못된 것일 경우는 물론이지만 설사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딸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게다가 주소까지 공개해서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는 실명보도가 흔히 저지르는 실정법 위반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81년 윤경화 노파 살해사건의 진범으로 발표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던 고숙종 여인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따라 진범으로 몰았을 뿐 아니라 남편의 신원도 상세히 보도했다. 그 결과 당시 공직에 있었던 그 남편은 아내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르기가 어려워 끝내 사직하고 말았다. 실명보도주의의 남용이 가져온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중의 하나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용의자로 몰리고 있는 사람의 남편은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남편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고 언론의 권리다.

현행 형법은 일반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에서 사실의 적시가 위법성이 없기 위해서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과 「공공의 이익」이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만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형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해서 「사랑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는 위법성의 조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사건보도의 경우 「사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출판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조항에는 저촉될지도 모를 일이다 앞서 예로 든 금융기관 간부 부인의 남편과 딸, 고숙종 여인의 남편의 이름과 직업을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한 것은 「진실」이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실명보도는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저촉될 수 있다. 형법 제 126 조는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1차적으로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수사기관들부터가 이 형법조항을 거침없이 어겨왔다. 수사기관의 장이나 장관까지도 여러가지 발표를 통해 이 법조항을 어겨왔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관행은 불법적인 것이고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의사실공표금지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이다. 수사기관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언론에 수사내용을 알려줄 수 없을 것이고 언론도 그것의 보도가 불가능해져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제약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형법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로써 수사당국이나 언론이 다같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권적 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더 커지게 됐다. 단서조항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마구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당국이 피의사실의 공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겠지만 언론도 수사기관의 제보나 발표라고 해서 그대로 보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구언론의 경우실명으로 어느 사랑의 범죄혐의를 보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조건을 고려할 것을

윤리강령이나 보도지침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첫째 수사당국의 제보나 발표라도 실명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과 같은 간접표현을 썼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확정판결 전의 보도에선 구속자나 피의자가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기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피의사실과 피의자 이름의 실명보도는 수사책임자의 발표이거나 피의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말단 수사관이나 형사의 발언을 곧 수사당국의 공식견해로 보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실명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언론이 가장 자주 실수를 범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이라고 표현되는 기사 중 상당수가 실은 어느 경찰관 개인, 청사 개인의 심증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면 실명보도에 따른 공적 인물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 저명기업의 간부 등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반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는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인의 행위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실명으로 보도해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 행위가 그 공인의 임무수행이나 직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해와 관계될 때에만 그러하다는 것이 법 해석이다. 그러므로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실명으로 보도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전적으로 사적인 행위여서 실명보도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우리 언론도 실명보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 세워야**

우리 언론은 스스로 만든 윤리규정이나 보도기준조차도 지키지 않아 실명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는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언론은 외국의 언론처럼 세세하고 엄격한 보도윤리규정이나 보도기준, 준칙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초보적인 기준만은 모두 갖고 있다. 대단히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나 기사스타일북을 마련하고 있는 언론사가 없지 않고 그 가운데 실명보도와 관련한 각 사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독자적인 기사스타일북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 도서윤리실천요강 등이 미성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봉육한 여인의 성명과 주소,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소속 언론사인 이상은 미성년피의자와 봉육한 여인에 관한 기준은 있는 셈이다. 특히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타인의 명예와 자유」에 관한 해석을 위한 세부적인 보도기준도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나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주소기입 때 시에 있어서는 번지와 통, 반, 그 밖의 지방에 있어서는 리, 반 및 번지를 밝혀서는 안되며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람이 나 주소를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용의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이나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이름, 주소, 사진, 직업명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또 간첩이나 강력범 신고자에 대해서도 가명 또는 이니셜로 보도해야 하며 사진, 직장, 주소를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기초적인 윤리강령이나 보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생긴 이래 심의 때마다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었던 때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

된다. 윤리강령이나 보도기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러하면서도 그저 관행에 따라 실명보도를 계속해나갈 때 인권침해는 끊일 수가 없을 것이다.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점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는 강화되면 될수록 좋다. 그러나 그 알 권리의 주된 대상은 어디까지나 권력이나 공적 기관이지 평범한 개인의 사적 행위는 아니다. 개인의 사적 행위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엔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상관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을 전제로 않은 채 국민의 알권리만을 내세워 실명보도를 마음대로 하고 더구나 자체적으로 제정한 윤리강령이나 보도기준조차 철저히 지키지 않을 때 언론은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실명보도가 과연 합당한 언론의 보도자세인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선 한번도 논의를 한 바가 없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실명보도주의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결과 역시 실명보도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필요하며 그 논의과정을 통해 실명보도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인식은 실명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명보도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경우에 있어서도 언론사들이 해결을 서둘러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성인에 관한 보도일지라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보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경칭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경우에 그것을 쓰며 어느 경우에 생략해도 좋은지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외국 언론사들이 그것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그것의 마련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수습기자의 훈련과정에서 인권의식의 강조와 함께 현재 마련되어 있는 윤리강령과 보도기준이라도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미성년자, 봉욕한 부녀자, 범죄신고자의 이름, 주소조차도 흔히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의 수치이다. 언론 스스로의 모습이 그러하면서 인권문제를 보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요즘 언론에 대한 사회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언론횡포」를 넘어 「언론독재」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언론이 극히 기초적인 인권보호문제에 대해서조차 현재처럼 무관심하는 한 그런 극단적인 비난에도 반박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신문대학원

구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